

의안번호	제243호
의결연월일	2024.1.12.

-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. 3. 후원표 의원 외 2인
- 회 부 일 자 : 2024. 1. 5.
- 상 정 일 자 : 2024. 1. 12.

제297회 예산군의의회(임시회)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[대표발의자 : 후원표]

가. 제안이유

- 사과, 배 등 장미과 과수에 주로 발생하며 소독·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지병해충의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매몰, 폐원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(안 제3조)
-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(안 제5조)
- 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이성용)

- 본 조례 제정안은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·보급, 「식물방역법」에 따른 소독·폐기 등의 조치로 기주식물을 소각·매몰한 과수농가의 영농활동 지원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금지병해충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과수화상병의 경우 매년마다 발생하고 있으며, 감염 의심 과수는 매몰하고 확진 시에는 과원 전체를 매몰 하도록 되어 있어 폐원으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가 상당한 손실을 초래함.
- 따라서 금지병해충 피해 발생 농가에 대한 생계유지와 경영안정을 위한 많은 노력과 대체작물 식재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조례제정 안으로

-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자치법규의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생략

5. 토론 요지

- 없음

6. 심사 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